



2010. 10. 29.

사건번호 2010년 형제45767호, 45793호, 53064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감사 백재명은 아래의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 I. 피의자
 - 1. 가 이준삼
 - 2. 가 상희락
 - 3. 나 이준삼
 - 4. 나 상희락
 - 5. 가 상희락
 - 6. 가 이준삼

- II. 죄 명
 - 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III. 주 문

- 1. 피의자 이준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 2. 피의자 상희락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가려
- 3. 피의자 이준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 4. 피의자 상희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려
- 5. 피의자 상희락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각하
- 6. 피의자 이준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IV. 피의자사실과 불기소 이유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 이준삼은 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피의자 상희락은 경찰청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의자 이춘삼은 2010. 4. 15. 검찰청 정보2과 사무실에서 ‘좌파와 우파 교육감 후보의 정보를 수집해 5일내로 보고하라’라는 제목으로 ‘() 좌파의 선거 전략, 부상급식, 후보단일화 외 좌파 세력들이 어떤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 전교조, 민주노동당 등 좌파 세력들이 좌파 교육감 후보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사급, 조직적인 면 등/ 범당을 교묘하게 피해서 나가는 측면은 - 학교, 교육청 관계자들의 지리 후보 순대기 등 지원 현황 파악, () 좌파 내부에서: 어떤 선거에서 어떤 강도 승선이 있다고 보는지 - 좌파 쪽에서 보기에 서울, 경기 등 주요 지역에서 이길 것으로 보는지, 그 이유는 ※ 16개 교육감 중에서 어느 강도 승리를 예상하는지, 한나라당에서 반전교조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 박혀들이 가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양방향력이 없다고 보는지 /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 우파 교육계는 선거 대비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 우파 교육감 후보들의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라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내부 진상방을 통하여 검찰 기 직명 검찰청과 각 검찰청서 정보과를 상대로 발송하였다.

피의자 강희락은 피의자 이춘삼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0. 6. 2. 실시되는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한나라당)과 가까운 성향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일선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밀원상 의무없는 위법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일선 경찰관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수사한 경과

1. 다름이 없는 사실

() 2010. 4. 16. 피의자 이춘삼이 피의자선 요지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지방경찰청 정보과 담당경찰관들에게 검찰청 내부 진상방으로 송부하였다.

() 2010. 4. 21. 위와 같은 사실이 연합뉴스 등 언론에 보도되었다.

2. 고발인들의 주장

() 피의자 이춘삼이 ‘좌파 후보의 선거전략, 좌파세력들이 좌파후보에 대한 지원 여부, 범당을 교묘히 피해가는 측면’ 등을 파악하는 등 정보 수집을 통하여 좌파 후보를 선거범 위반 등으로 수사함으로써 좌파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고, ‘우파 교육계의 선거대비 전략, 우파 진영의 승리를 위한 진보기들의 견해, 우파 후보들이 정부 여당에 바라는 점’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특정정당(한나라당)과 가까운 성향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이도로 문건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 이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



관련하는 행위를 한과 아울러 경찰관들로 하여금 범용상 의무없는 위법한 정보수집을 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3. 피의자 이준삼에 대하여.

(○) 피의자 이준삼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선교조나 민주노동당이 선보 작업을 지원한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현직 교육감에게 줄대기를 한다는 정보도 있어 교육감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정보 수집은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근거하여 행하는 직무이고, 그 절차는 우선 정보 담당 경찰관들이 보고를 분석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정보수집 직무를 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1) 경찰청 정보 담당 경찰관 개인이 일선의 보고내용이나 언론 보도 등에서 보고할 항목(아이템)을 찾고, (2) 일선 정보 경찰관, 전문가 등을 통해 그 아이템의 진위 여부, 타당성, 정보수집 필요성과 가치 등을 검증하고, (3) 보고서용 작성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부 검제를 거쳐 정식으로 보고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4) 각 지방경찰청에 공식으로 정보수집지시를 하달하고, (5) 수집, 보고된 자료를 분석, 판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6) 상급자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 본건은 위 절차에 해당하는 보고할 항목(아이템)을 찾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내부보고나 검제를 받지 않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다.

해소 업무를 하면서 진분이 있는 9명의 지방경찰청 정보 경찰관들에게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언론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각 후보 진영의 선거전략은 어떤 것이 있고, 이러한 전략이 향후 정치권의 교육감선거 개입, 각종 단체의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등 불법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에서 '아이템 공유'라는 제목으로 본건 문건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개인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발송한 이메일 원본은 발송 며칠 후 통상의 경우처럼 삭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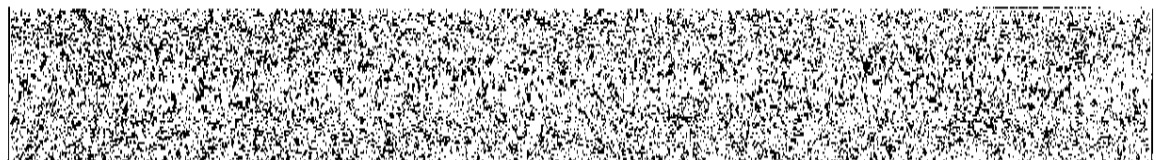
본건 문건을 보낸 경찰관들로부터 어떠한 정보나 보고서의 이전본은 지식을 없다.

본건은 선보?보수 작업의 후보의 선거전략이 향후 정치권의 교육감 선거개입, 각종 단체의 불법지원 등과 어떻게 연결될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의도였는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신(피의자 이준삼)은 한나라당의 선거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의 접촉한 사실이 없다.

(○) 본건 이메일 문건을 수령한 경찰관 수병희 등 경찰관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피의자 이준삼이 '아이템공유'라는 제목으로 본건 이메일 문건을 보내왔는데, 이를 정보 아이템 선정을 위한 단순한 참조요청으로 받아들였다.

- 일부 경찰관은 피의자 이준삼의 이메일 문건을 그대로 일부 정찰서 정보 경찰관들에게 보내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보고인만한 자료가 없거나 언론 보도 내용 수준의 자료 뿐이라 별도로 회신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부 경찰관들은 단



순한 협조요청이므로 처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있던 등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본건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본건 이메일에 따라 정보보고를 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1) 경찰청 정보과 문서등록대상 및 각 지방경찰청 정보과의 접수문서 목록에는 본건 본건과 같은 내용의 문서가 정식으로 처리된 사실이 없다.

(2) 피의자 이준삼이 본건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으로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이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참여하였다는 고발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선거운동의 기획’이라 함은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관례는 제주도지사 선거의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출마한 현직 도지사인 후보자의 방송사 토론회 담당자료를 작성하고 예행연습을 한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출마한 현직 단체장인 후보자의 인터뷰 자료의 토론회 자료의 작성에 관여하거나 선거용 프로그램을 작성한 행위, 공무원이 후보자의 홍보물 파일의 수정안 조인을 작성하고 분구를 검토한 행위, 후보자의 인선문?인터뷰 자료?선거공약?토론회 자료?보도자료?당선소감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건네 준 행위,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현직 도지사의 선거사무실에 제공한 의도로 그 후보자가 참석하기로 예정된 ‘충청북도 도지사 후보자 조상 토론회’의 질문자에게 전화로 위 토론회에서 할 질문내용을 미리 송부하여 달라고 부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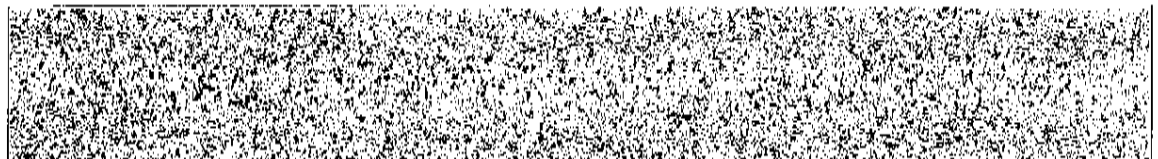
- 피의자 이준삼이 작성하여 발송한 본건 이메일 문건의 내용이 일용 교육감선거에서 우파 성향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이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문이 아니라 피의자 이준삼의 개인 이메일로 문건을 발송한 점, 문건을 발송한 대상도 전체 지방경찰청이 아니라 피의자 이준삼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문건을 발송한 점, 이메일 문건을 수령한 경찰관들은 이를 업무지시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의 단순한 업무협조요청으로 받아들여보고 정보보고 등의 회신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경찰 치안정보 수집 차원에서 교육감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도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치안정보 수집 차원에서 보수?진보 후보의 선거전략에 대한 정보수집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는 피의자 이준삼의 주장도 충분히 인리가 있고,

본건 이메일 문건 기재 내용과 이를 발송한 행위만으로는 피의자 이준삼이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참여하거나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는 등 선거운동의 기획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널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3) 피의자 이준삼이 본건 이메일 문건을 통해 일선 경찰관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고발인들의 주장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 이준삼이 본건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경찰 치안정보 수집을 위한 직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



는 것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의무없는 행위가 이득된 것 또는 권리행사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인 바, 본건의 경우 피의자 이준삼으로부터 이메일 문건을 수령받은 경찰관들이 실제로 정보수집 활동을 하지도 않고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는 등 의무없는 행위가 이득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건적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증거불충분하여 범죄혐의 없다.

4. 피의자 감히락에 대하여,

() 고발인들은 피의자 감히락이 피의자 이준삼에 대한 위 피의사실 기재 범행을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모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의자 감히락의 경우 피의자 이준삼에게 피의사실을 지시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 공모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의자 이준삼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의자 감히락에 대하여는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 작하한다.

각 주분과 같이 설정한다.

부고판단 : 고발인들의 고발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것으로 부고혐의 인정하기 어렵다.

